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11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윤준병・박희승・박홍배

문대림 · 임호선 · 이원택

문금주 • 주철현 • 송옥주

이병진 · 임미애 · 서삼석

민병덕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재해 피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 예방 및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등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일조량 부족' 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의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제3조제1항).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신설).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 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 사.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 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
- 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 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을 "호우(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풍"으로,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을 "병해충(病害蟲)"으로, "그 밖에"를 "그 밖에 이상고온 (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조제2항에"를 "제5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
-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해대책의 목표
- 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5.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6.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재해대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 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5.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6.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 7.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재해대책에 드는"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외하되, 복구 및 지원 금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그 밖의법령에 따른 복구비 및 지원금 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비료대금"을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는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심의위원회)"를 "(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에"를 "농어업재해대책에"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로, "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3.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 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 5.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6.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⑤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 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 5.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6. 어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⑥ 제4항제1호·제5호 및 제5항제1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 ⑦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 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⑧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 5.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 중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에게"를 "자(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주민을 포함한다)에게"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에게"를 "자(제1항에 따른 지원 요구를 받아 지원한자를 포함한다)에게"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
 - 1.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
 - 2.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
 - 3.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보험목적물 피해에 관한 자료
 - 4. 친환경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에 관한 자료
 - 5. 상습침수구역에 관한 자료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가·어가의 경영안 정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지원 등을 위

한 조사 · 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의3(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u>호</u>	2 <u>호</u> 우
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	<u>요</u>
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	
(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	병해충(病害蟲)
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	
생동물을 말한다), <u>그 밖에</u>	<u>그 밖에 이</u>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	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
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u> 부족 등</u>
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	
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	
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	3
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	

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u>제5조제2항에</u> 따른 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 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 1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신 설>

<u>제5조제1항에</u>

4. ~ 13. (현행과 같음)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 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 한다.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 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해대책의 목표
- 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

 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5.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 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6.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통 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재해대책)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
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 활용할 수 있다. 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 구에 관한 사항
-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 ·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 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 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 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 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5.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6.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 해 예방에 관한 사항
 - 7.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 해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 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 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신 설>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 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 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2(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 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 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 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 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u>재해 이전까지</u>
<u>생산에 투입된</u>
제외하되, 복구 및 지원 금
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
에 따른 복구비 및 지원금 또
는 「농어업재해보험법」
<u>지원하여야 한다</u> .
②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2. (생략)
-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u>비료</u> 대금

4. ~ 10. (생략)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 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나.(생 략)

- 2. ~ 4. (생 략)
- ④ ~ ⑥ (생 략)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 1.•2. (현행과 같음)
3
<u>b</u>]
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
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u>일부</u>
4. ~ 10. (현행과 같음)
③
1
- '
가.·나.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 4.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 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u>후단 신설></u>

<신 <u>설></u>

⑧ (생략)

제5조(심의위원회) ① <u>농업재해에</u> 관한 <u>사항을 심의하게 하기</u>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 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 설>

<신 설>

-----. <u>이 경우 국가 및 지방</u> <u>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u> 지원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는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5조(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 의위원회) ① <u>농어업재해대책</u> 에-----<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심의하기-----

 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 1.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_설>

<신 설>

-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 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 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 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다.
- ④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 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 토교통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 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 5.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6.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 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⑤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 앵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재해 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을 담 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 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 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 토교통부・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사람
- 5.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6. 어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⑥ 제4항제1호·제5호 및 제5항제1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는 2년으로 한다.

- ①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 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 야 한다.
- 8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시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심 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 1.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관한 사항
 -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

사항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조 의제)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 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 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 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 을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u>3</u>	<u>역구</u>					
5.	. 7].	후변화	가 -	농어업	에	미치	늰
	영형	분 및 디	H 책				
6.	. 그	밖에	위	원장이	필	요히	다
	고_	인정하	ի여	회의	4)	부치	늰

세	5조의3	(벌칙	적용에게	너 공	구무원
	의제)	심의위	<u> 원회의</u> -		

제7조(응급조치) ① • ② (생 략) 제7조(응급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odot				
	자(제1	항에	따라	응급
조치에	종사한	주민	을 포	함한
다)에게				
	·			

④·⑤ (현행과 같음)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
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
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
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② 7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u>자에게</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가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자</u> (제1항에 따른 지
원 요구를 받아 지원한 자를
<u> 포함한다)에게</u>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통계의 수집 · 관리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아거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수있다.
- 1.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 피해 규모에 관한 <u>자료</u>
- 2.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
- 3.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보험목적물 피해에 관한 자료4. 친환경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에 관한 자료
- 5. 상습침수구역에 관한 자료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u><신</u> 설>

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가·어가의경영안정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3(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 법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